의 안 번 호

1475

[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]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8. 8. 29.(수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8. 30.(목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9. 14.(금)

2. 제안설명 요지(행정지원국장 조수관)

가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을 결정하기 전에 "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"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

나. 주요내용

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(취득)으로 6,098백만원임

1)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

- 토지매입 452.1㎡, 건물매입 369.42㎡ : 797백만원
- 건물신축 연면적 1,410㎡(지상 4층) : 4,100백만원

2) 동백 시니어센터 조성

- 토지매입 228,0㎡, 건물매입 104.05㎡ : 401백만원
- 건물신축 연면적 240㎡(지상 2층) : 800백만원

다. 취득계획 세부내역

①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

- 1) 주관부서 : 문화관광실
- 2) 취득 재산현황
 - O 위 치 :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153-1번지
 - O 취득재산
 - 토지매입 : 2필지 452.1㎡, 건물 매입 2동 369.42㎡
 - 건물신축 연면적 1,410㎡(지상 4층)
 - O 용도지역: 도시지역, 제2종일반주거지역
 - 기준가격 : 4,724,611천원(토지 및 건물 매입, 건물 신축비)
 - ※ 총사업비: 4,897,000천원
- 3) 취득사유
 - O 2017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에 따른 부족한 주차장 부지 확보 필요(2필지 매입)
 - 현, 학성동주민센터를 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하여 다양한 이용자 계층의 세대간 교류를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과 공동육아 나눔터, 돌봄교실 등 부처협업 사업을 연계하여 여성, 노인, 아동 등 다양한 연령별 문화공유 및 체험활동 지원
- 4) 주요시설 : 동주민센터, 다목적회의실, 공동육아나눔터, 도서관, 장난감대여소,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, 문화교실 등
- 5) 사업기가 : 2018. 10월 ~ 2020. 12월

② 동백 시니어센터 조성

- 1) 주관부서 : 문화관광실
- 2) 취득 재산현황
 - 위 치 :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동 139-2번지
 - O 취득재산
 - 토지매입 : 1필지 228.0㎡, 건물 매입 1동 104.05㎡
 - 건물신축 연면적 240㎡(지상 2층)
 - O 용도지역: 도시지역, 제2종일반주거지역
 - O 기준가격: 1,111,187천원(토지 및 건물 매입, 건물 신축비)
 - ※ 총사업비: 1,201,000천원
- 3) 취득사유
 - 2017 학성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어르신들이 교류할 수 있는 쾌적한 커뮤니티 공간과 경제적 활력증진을 위한 실버공동작업장 조성 필요
 - 기존 경로당(학남경로당) 기능을 유지하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일자리사업(예: 마을반찬가게)운영 거점 으로 활용하고, 다양한 실버케어 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옥상텃밭 조성으로 건강한 주민공동체 회복
- 4) 주요시설 : 실버공동작업장, 경로당, 사무실, 옥상텃밭 등
- 5) 사업기간 : 2018. 10월 ~ 2019. 12월

라. 근거법규

- O「지방자치법」제39조
- ○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
- O「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제11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영환)

- 본 계획안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,
- 본 계획에 의하면 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 4,897백만원, 동백 시니어센터 조성 1,201백만원으로 총 6,09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,
- 그 중 국비 2,799,000천원으로 45.9%, 시비 1,399,500천원으로 23.0%, 구비 1,899,500천원으로 31.1%를 차지하고 있음.
- O 취득재산(안)의 내용을 살펴보면
 - 노후된 공공시설물 개발을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지역 여성, 어르신, 아동 등 다양한 연령별 문화공유 및 주민 동아리 활동 지원 등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"학성커뮤니티 키움센터"를 조성하고.
 - "동백 시니어센터 조성"은 노후화된 기존 경로당을 활용 침체된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법

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1. ~ 5. (생 략)
-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
- 7. ~ 11. (생략)
- ② (생략)

핝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(약칭: 공유재산법)

-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·변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·구 (자치구를 말한다)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「지방자치법」제46조에 따른다.
 - ④~⑤(생략)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(약칭: 공유재산법 시행령)

-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 - 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 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 - 2. **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**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
 - 가. <mark>취득</mark>의 경우: 1건당 6천제곱미터(시·군·<mark>자치구의 경우에는</mark> 1천제곱미터)
 - 나. 처분의 경우: 1건당 5천제곱미터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)
 -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
 - 1. 사업목적 및 용도
 - 2. 사업기간
 - 3. 소요예산
 - 4. 사업규모
 - 5. 기준가격 명세
 - 6. 계약방법
 - ③ ~ ⑤ (생 략)

-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1건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1. 같은 취득 · 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
- 2.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·처분하는 경우
- 3.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
- 4.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
- 5. 해당 재산에 인접(隣接)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·처분하는 경우
- 6. 분필(分筆)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 으로 관리·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·처분하는 경우
- 7.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⑦ (생략)

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

- 제11조(공유재산 관리계획)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- ②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
 - ③ (생략)